

「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」 협약서

경상북도,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, 주식회사 먹깨비, (재)경상북도 경제진흥원,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는 「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」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「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」 (이하 ‘배달앱’이라 한다)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·단체(이하 ‘협약기관’이라 한다) 간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 원칙)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이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상북도 : 배달앱 사업에 대한 정책 및 행정적 지원 등 사업관리 총괄
2.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: 가맹점 가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 홍보,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지원 등 배달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3. 주식회사 먹깨비 : 배달앱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중개수수료·광고료 부담을 절감하는 배달앱 개발·운영관리 등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4.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: 배달앱 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협약기관과의 협력 및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5.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: 소속회원사들에게 가맹점 가입·홍보 등 배달앱 추진 협력에 관한 사항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, 기간 종료 후에는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주식회사 먹깨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협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·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가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은 협약서 5부를 작성하고 서명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2021년 6월 28일



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
회장 백 선 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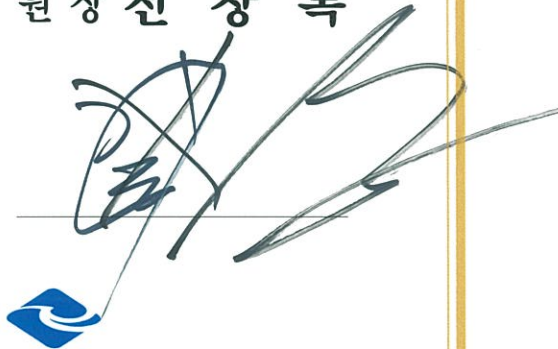


주식회사 먹깨비
대표 김도형, 김주형



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
원장 전 창 록





(사)한국외식업중앙회
경상북도지회장 김 원 길





경 상 북 도
도지사 이 철 우

